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최정금 소유물건(2025타경101905)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김범석

감정평가서번호: D3250915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사무소 대응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용식

(인)

감정평가액	일억삼천칠백만원정(₩137,000,000.-)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김범석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3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최정금 (2025타경101905)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10.02	2025.10.01 ~ 2025.10.02	2025.10.03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세대	구분건물	1세대	-	137,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137,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소재 “다대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대해송아파트 제101동 제2층 제203호로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실지조사 및 기준시점

1)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10월 02일로 하였음.

2)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10월 02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한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4.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가.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의거 하였음.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방법” 이라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시산가액” 이라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다만 대상 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는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3) 일괄·구분·부분 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16조에 의거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였음.

5. 그 밖의 사항

1) 본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관련 공부에 의하였음.

2) 본건은 현황점유부분 등에 의거 위치를 확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인근 유사물건 및 관련공부와 외부관찰에 의하여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경매진행 및 응찰시 내부이용상황, 관리상태 등을 재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격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였음.

2. 대상물건 개요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13-11			
건물명,층,호수	다대해송아파트 제101동 제2층 제203호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사용승인일	1991.12.16	
면적	전유면적(m ²)	공용면적(m ²)	공급면적(m ²)	대지권면적(m ²)
	52.11	23.18	75.29	43.01
공동주택(아파트)가격 2025.01.01. 기준	81,200,000원			

3. 거래사례의 선정

(1)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체계)

기호	소재지 (사하구)	건물명/동	층/호수	전유면적 (m ²)	단가 (전유면적/m ²)	거래금액 (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A	다대동 113-**	다대해송아파트 /**	*/**	52.11	2,686,624	140,000,000	2025.02.26 (1991.12.16)

(2) 비교사례의 선정

대상물건과 물적 유사성, 위치적 유사성 등이 있는 거래사례 "A"를 선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사정보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없
음.(1.00)

5. 시점수정

대상물건의 가격변동추이를 반영할 수 있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 가격동
향조사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음.(기준시점
지수 미발표시 최근지수 적용)

시점수정치
아파트 지역 : 부산광역시 사하구(25.02.26~25.10.02)
거래시점 : 2025.02.26, 2025년01월 지수를 적용 함
기준시점 : 2025.10.02, 2025년09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이전 이므로 2025년08월 지수를 적용함
2025.02.26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5년01월) : 100.5
2025.10.02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5년08월) : 98.7
시점수정치 : $98.7/100.5 \approx 0.98209$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가치형성요인 비교

[본건/거래사례A]

구분		격차율		비교 내용
조건	세항목	사례	본건	
외부요인	가로조건	1.00	1.00	대등함.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건물요인	설계, 설비, 시공상태의 양부 등	1.00	1.00	대등함.
	노후도			
	전용률			
	공용시설의 규모, 구성, 상태 등			
개별적 요인	층별, 평형별, 위치별 효용도 등	1.00	1.00	대등함.
	베란다의 유무 및 면적의 대소			
	주차장 등의 유무 등			
	부지에 대한 지분 면적의 대소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대등함.
누계		1.00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비준가격

거래사레가격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전유면적 비교(m ²)	산출가액	비준가격(원)
140,000,000	1.00	0.98209	1.000	52.11 / 52.11	137,492,600	137,000,000

Ⅲ. 참고가격 자료

1.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 수준

전유면적당 @2,600,000원/m² ~@2,700,000원/m²내외 수준으로 조사됨.

2. 인근 평가전례

기호	소재지 (사하구)	건물명/동	층/호수	평가 목적	전유 면적 (m ²)	평가액 (천원)	단가(원) (전유면적/m ²)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1	다대동 113-**	다대해송아파 트/***	*/***	경매	52.11	143,000	2,744,195	2024.08.12 (1991.12.16)

I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 137,000,000원(약@2,630,000원/m², 전유면적기준)

2. 결정 의견

거래사레비교법에 의한 비준가격은 인근 평가전례 및 실거래가격수준 등에 비추어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비준가격으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70	113-11 다대해송 아파트 101동	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공동주택	25,539.5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13-11									
	상 동	113-14							3,250		
	상 동	113-15							1,004		
	상 동	113-9			3,591.2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2층 제203호				52.11	52.11	137,000,000	비준가격			
					4,103	4,103					
	1,2,3 소유권대지권				-----	-----					
					2,979,350	2,979,350					
					198	198					
4 소유권대지권			-----	-----							
			359,120	359,120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82,200,000					
					건 물 :	54,800,000					
	합 계					₩137,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소재 "다대초등학교"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지하철(낙개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지상15층 건내 제2층 제203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
창호: 샷시창.

(4) 이용상태

공부상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시설, 승강기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토지로,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 가로망 정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113-11번지(대표지번)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04.05),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상대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3.10.11),택지개발지구 등.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없음.

위치도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13-11 다대해송아파트 101동 2층 203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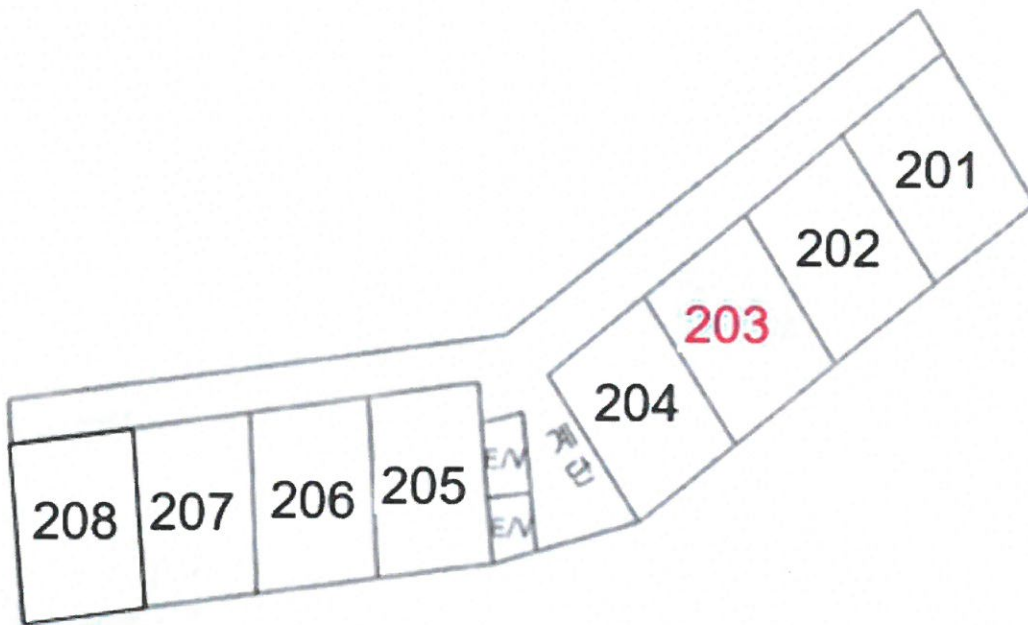
내 부 구조 도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13-11 다대해송아파트 101동 2층 203호

제101동 제2층 호별배치도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사 진 용 지



공동출입문

사 진 용 지



복도 전경

사 진 용 지



본건